

운영규정

1999년 10월 25일 제정
2002년 5월 31일 개정
2006년 4월 8일 개정
2007년 6월 23일 개정
2009년 5월 30일 개정
2009년 7월 27일 개정

제1조(목적 및 명칭) ①이 규정은 대한운동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(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)의 국문 명칭은 “운동학 학술지”라 하고 영문명칭은 “KINESIOLOGY”라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역할과 기능) 이 위원회는 학술지 발행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, 논문집의 출판 및 등재, 홍보 등의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) 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장: 1인
2. 부위원장: 약간 명
3. 간사장: 1명
4. 평위원 25인 내외(단,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장 포함)

②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득한다.

1. 위원장은 운동학의 발전에 공로가 있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에서 운동학회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.
2. 부위원장 및 간사장은 선임된 평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.
3. 평위원은 운동학 분야의 연구 활동이 탁월하고 대학교육 또는 현장지도 경험이 월등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.
 - 가. 유관 단체 임원
 - 나.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
 - 다. 운동원(運動院) 경영자 혹은 임원
 - 라. 의사 혹은 한의사 등의 의료인
 - 마. 운동사 등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운동전문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최근 5년간 5편 이상인 연구 실적을 가진 자

③편집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임을 위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편집위원추천소위원회(5인 내외)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무) ①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단,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최고 연장자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.

②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담당업무를 분장한다.

1. 윤리: 연구윤리 심사
2. 기획: 논문의 체계 및 내용 심사
3. 국제: 영문초록 지도

4. 출판: 논문양식 및 지면편집, 인쇄

5. 등재: 평가기관 등재 업무

6. 홍보: 홍보 및 구독신청, 광고수주

③간사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투고논문 접수, 심사과정의 진행 및 연락, 출판, 등재,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.

④평위원은 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소집) ①정기위원회: 위원장은 학술지 발간 일정에 맞춰 매호 1회씩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임시위원회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, 각 부위원장의 특별요청 또는 5인 이상의 평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) ①이 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편집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2. 논문 심사위원 풀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
3. 심사결과의 검토 및 쟁의조정, 게재여부 결정
4.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치 사항
5. 학술지 출판, 등재, 구독신청 및 광고수주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해 협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
제8조(학술지 발간 일정) 학술지 발간은 연 4회로 하며, 발간일은 1월 30일, 4월 30일, 7월 30일, 10월 30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)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협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.

제10조(위임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부칙[1999.10.25]

이 규정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2.05.31]

이 규정은 200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6.04.08]

이 규정은 200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7.06.23]

이 규정은 200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9.05.30]

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9.07.27]

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